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명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광 호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명

이 명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_____ 이 승 종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박 순 애 _____ (인)

위 원 _____ 정 광 호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활동을 통해 경영자 등이 특정한 목적으로 외부 재무보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인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회계투명성의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인인 국민과 정부를 매개로 하여 복대리 관계에 놓여 있으며, 공기업은 이러한 복대리 관계로 인해 대리인문제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역시 이익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익조정은 대리인이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리인문제로 발생되는 정보비대칭과 도덕적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내부감사제도가 있는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대표되는 내부감사기구는 소속기관의 업무집행과 재무보고 과정을 감시하여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내부감사기구가 감사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의 지표로 감사원에서 매

년 수행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과 이익조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분석에서는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측정지표로 내부감사기구가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활용하여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은 수정Jones 모형에 의한 발생액 이익조정과 Zarowin 모형을 활용한 이익유연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분석인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독립변수인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이익유연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분석인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독립변수인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은 발생액 이익조정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우수할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부감사의 활동성 그 자체로는 회계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내부감사기구가 결산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같은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을 강화할 때 회계투명성이 유의하게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한다. 다만,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도 이익유연화 형태의 이익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더욱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 회계감사 관련 감사품질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공기업에서 결산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같은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우수할수록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이 통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기업, 내부감사활동, 이익조정, 회계투명성
학 번 : 2018-2823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 1

제 2 절 연구목적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8

제 1 절 이론적 배경 ····· 8

1.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 ····· 8
2. 이익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20

1. 민간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 20
2.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 22
3. 내부감사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 26
4. 선행연구의 한계 ····· 28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29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1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33

1. 연구문제 ····· 33
2. 연구방법 ····· 38

제 3 절 변수 ····· 42

1. 독립변수 ····· 42
2. 종속변수 ····· 43
3. 통제변수 ····· 46

제 4 장 분석결과 ····· 50

제 1 절 기초통계량 ····· 50

제 2 절 상관관계분석 ····· 51
제 3 절 실증분석결과 ····· 53
1. 분석 1 : 전반적인 감사활동과 이익조정(가설 1) ····· 55
2. 분석 2 : 회계 관련 감사활동과 이익조정(가설 2) ····· 61

제 5 장 결론: 연구요약 및 함의 ····· 68
제 1 절 연구의 요약 ····· 68
제 2 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69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 ····· 71

참고문헌 ····· 73
Abstract ····· 76

표 목 차

[표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 30
[표 2] 공기업의 종류 ····· 31
[표 3]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기준 ····· 34
[표 4] 독립변수 ····· 43
[표 5] 변수와 측정지표 ····· 49
[표 6] 기초통계량 ····· 50
[표 7] 상관관계 분석결과 ····· 52
[표 8] 가설1-1의 분석결과 ····· 56
[표 9] 가설1-1의 분석결과 ····· 59
[표 10] 가설2-1의 분석결과 ····· 62
[표 11] 가설2-2의 분석결과 ····· 65
[표 12] 분석결과 정리 ····· 67

그 림 목 차

[그림 1] 발생액의 구성 ····· 15
[그림 2] 연구의 기본개념 틀 ····· 3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발전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방지, 국민의 복지향상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데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수는 338개이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수는 312,320명이며, 전체 자산은 811조원, 부채가 496조원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일반 민간기업의 특성인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과도한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 저조한 실적을 내는 경우 방만 경영이나 경영 무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경영자 등이 특정한 목적으로 외부 재무보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인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상존한다(안일준, 1990).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익조정 행위가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당해연도의 실적을 기초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

게 되는데 재무지표는 해당 기관의 계량실적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될 경우 더 많은 성과급과 좋은 평판 등 보상을 얻게 되지만,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 성과급 감소나 예산 삭감은 물론 경영자 해임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역시 이익조정 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중호・이호영, 2006).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부재무보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purposeful intervention)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익조정은 특정연도의 기업성과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미래의 더 큰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희생하게 하는 등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Gunny, 2005; Roychowdhury, 2005).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익조정은 기본적으로 재무정보 이용자와 재무정보 생성자 즉,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cy theory)[1]에 따르면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는 주인과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경영자의 숨겨진 행동이 유발되고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익조정은 대리인이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문제로 발생되는 정보비대칭과 도덕적해이를 해결하기 위

1) 공공기관은 주인(principal)인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 위임하고 정부는 경영 및 통제 권한을 공공기관에게 재위임하는 복대리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구조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해 공공기관 내·외부에는 다양한 감시제도가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의 업무집행과 재무보고 과정을 감시하여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이상철 등, 2013).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관리자의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외부회계감사인은 물론 내부 감독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기능과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위원회보다 회계감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서 우위에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내부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과 비교하여 회계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내용 등 각종 내부정보에 대해 우위에 있으며 회사 정책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상임감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엔론사태로부터 국내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저축은행사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과왜곡이나 재무제표 조작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외부회계감사나 외부기관의 감독 또는 감사기관의 관리로는 회계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윤리 경영의 준수, 회계투명성의 확보, 부정 혹은 비리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기업 내 존재하는 내부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2017 회계개혁'

의 내용에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참여확대, 외부회계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감사인 선임 권한의 내부감사기구로의 이관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조정 현상을 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내부감사기구[2]의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신상훈・김선미(2015)는 상임감사 직무수행 평가제도 도입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 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공기업 내부감사에 대한 직무성과평가의 도입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여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정현・김성환(2015)은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성과급이 감사활동의 결과물인 회계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 성과급 금액, 총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익조정 여부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감사의 업무 충실도를 높여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와 이익조정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는데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 자체감사기구를 통칭하여 '내부감사기구'로 명명하기로 한다.

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과 같은 형식적인 특성뿐 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실제 활동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감사위원회의 개최횟수를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지표로 활용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ie et al, 2003; 손성규 등, 2004; 홍지윤, 2009).

이처럼 감사위원회와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역할로 감사위원회를 주목하고 그 기능을 강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감사위원회의 지배구조 등 형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을 뿐 공기업 내부감사의 활동성이 이익조정을 억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기업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도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감사위원회가 연간 개최된 횟수 정도만을 사용하였는데,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에 대한 품질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표는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성을 측정하기에 미흡한 부면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지휘 아래 자체감사기구가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감사위원회가 제도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하더라도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실제 감사활동이 미흡하거나 그 효과성이 약한 경우에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손성규 등, 2004). 이러한 면에서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의 억제 요인으로서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지표들을 활용하여 내부감사의 활동성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내부감사기구가 감사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측정지표로 감사원에서 매년 수행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활용하여 내부감사활동과 이익조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해당 공기업의 내부감사활동을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로서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등급이 높은 기관은 내부감사에 의한 내부통제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 품질 또한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감사활동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회계감사보다는 업무감사에 중점을 두어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심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반적인 감사활동을 평가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측정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대표적인 감사활동 두 가지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결산감사 실시 여부'와 '내부감사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을 기관별로 계량화하고 이 요인이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새로운 지표들을 활용하여 공기업 내부감사의 활동성을 측정하고 내부감사활동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면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현재의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기업 내부감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대리인 문제는 기업의 소유는 주인이 갖지만 경영은 대리인이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함에 따라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제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은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활동영역은 민간부문에 가깝지만 기업의 특성은 정부부문의 성격을 갖는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기업의 궁극적인 소유 주체는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은 소유에 따른 권한행사와 관리 및 통제의무를 정부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기업의 위임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삼자간의 복대리인(Double agency)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대리관계 속에서 각 주체간의 목표가 서로 상충된다는 점과 공기업의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공기업이 가지는 다단계적 복대리

인 구조가 결합하여 공기업에 있어서 대리인문제는 민간기업 보다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준기, 2014)[3]. 더욱이 공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3년 정도로 짧아 대리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대리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인의 유인동기조화(Incentive compatibility)가 있는데 이는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목적에 맞게 노력할 경우 대리인에게 더 높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보상구조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의 추구라는 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정치인이나 관료의 기회주의적 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활동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또한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과제 중 하나이다.

공기업 내·외부의 감시기능강화를 위한 제도 역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제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나 감사원을 통한 외부감사제도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유의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제도나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제도와 같이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감시제도 역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기업의 내부감독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이면서 활동적일수록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손성규 등, 2004).

---

3) 공기업 대리인문제에 대해서는 김준기(2014). “공기업정책론”. 법문사, 57-61.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기업 내에서 내부감시자로서의 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이익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이익조정의 정의

이익조정은 연구자들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익조정 개념 중 하나는 Shipper(1989)가 정의한 개념인데, 그는 이익조정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부 재무보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purposeful intervention)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Healy와 Walen(1999)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조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회계처리 및 보고 과정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회계기간의 가정에 따른 회계기간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보고는 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계량화하여 보여주는 가장 신뢰성 있는 수치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 기업이 특정 회계연도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특정연도의 성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 뿐 미래의 더 큰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희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이익조정 행위를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Dharan(2003)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속이려는 이익조작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매출 목표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사익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이익조정 행위가 부정적인 의도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자들은 기업 외부에서 오는 충격과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구분하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외부 충격과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을 구분하여 주므로 보고된 이익의 정보가치가 증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익조정을 반드시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데, 이 때문에 Ronen & Yaari(2008)는 이익조정을 “실제 이익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관리 결정의 모음”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익조정의 정의에 따르면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행위인 분식회계나, 반대로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낮추기 위한 역분식 회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익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위반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익조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계적 관리기법의 변경을 통해 실제 이익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경영자는 기업의 실물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재고자산의 단가산정방법이나 대손상각비의 추정 변경, 그리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액과 내용연수의 추정 변경 또는 충당부채에 대한 추정치를 변경하여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매출할인 등 신용조건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투자나 재무 등 기업의 실물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화시켜 이익을 조정할 수도 있다.

(2) 이익조정의 원인

이익조정의 경제적 원인은 실증회계이론(positive accounting theory)[4] 과 이익평준화이론 등을 들 수 있다. Watts & Zimmerman(1986)은 이익조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요인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보너스 제도와 관련된 가설인데 이는 “보너스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영자는 이익을 미래에서 현재로 옮기는 회계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에 실현시키는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관의 부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때문에 흔히 부채약정가설로도 불린다. 이 가설은 “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관리자는 미래의

4) 실증회계이론에서는 조직을 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보고 회계제도의 선택은 그 기업이 처한 환경 및 내부구조에서 대리인비용에 해당하는 계약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익을 현재로 옮기는 회계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채약정, 즉 채권자가 부채를 빌린 기업에게 특정 조건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업은 부채 약정사항에 근접할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가설이다.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도 이 가설의 연장선에 있는데, Burgstahler & Dichev(1997)는 기업이 이익 감소와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송인만 등(2004)은 한국에서도 적자규모가 큰 기업이 이익조정을 하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많은 기업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가설은 정치적 비용가설로, 정치적 비용이 높게 예상되는 경우 현재의 이익을 미래로 옮기는 회계처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비용가설은 규모가설이라고도 하는데, 규모가 큰 기관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와 같은 정치적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의 이익을 줄이는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다.

이익조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로 이익평준화 동기에 따른 이익유연화 이론이 있다. 전통적인 이익조정 동기 이론인 이익유연화이론은 경영자가 회사의 순이익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이론으로 이익의 유연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에 대한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이익이 변동성이 적을 경우 장기적으로 조세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 실제로 조세당국은 기업의 이익변동이 심한 경우 부당한 세금포탈 행위를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일정한 이익규모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조세당국의 세무조사 등 직접적인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추세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미래 기대 창출 이익에 대한 현재가치로 산정되는데 안정적인 이익추세는 기업 가치 산

정 시 할인율을 감소시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당해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대로 당해 실적이 과도할 경우에는 차기 이후의 실적을 위해 당기의 이익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Gaver et al.(1995)은 이익이 경영자 보상의 상한보다 큰 경우에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생액을 조정하지만, 하한선에 미치치 못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생액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여 이익평준화 동기에 의한 이익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지하였다. Defond and Park(1997)은 기업들이 현재의 성과가 나쁘고 미래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회계이익 중 일부를 현재 시점으로 앞당기지만, 현재의 성과가 좋고 미래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이익을 이연시켜 미래에 계상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3) 이익조정의 측정 방법

1) 발생액 이익조정의 측정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익조정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방식을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한 시점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회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현금의 유입 시점이 아닌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활동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 역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해당 비용의 발생 원

인이 되는 수익이 인식된 시점과 대응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의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응하여 장기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데 많은 추정과 판단이 개입하게 되며 그 결과로 발생액(Accruals)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발생액은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간에 나타나는 차이로서 회계상 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생액이 많을수록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 및 개입에 의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액 전체가 이익조정에 해당한다고 확정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발생액이 경영자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과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재량적 발생액(Nondiscretionary accruals)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조정은 총 발생액 중 비재량적 부분을 제외한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여 측정한다.

<그림 1> 발생액의 구성

발생액(Accurals) = 순이익 - 영업활동현금흐름

재량적 발생액 (Discretionary accruals)	비재량적 발생액 (Nondiscretionary accurals)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추정, 판단 등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발생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

* 출처: 김산(2014), 재구성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재량적 발생액은 총 발생액에서 비재량적 발생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발생액의 경우 공시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비재량적 발생액은 공시자료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추정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추정 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모델은 Jones모형 계열의 모델이다.

총 발생액은 매출액 변화에 의존하는 매출채권과 같은 계정의 변화를 포함한다. 매출액은 기업이 직면하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유형자산은 비재량적 발생액과 관련되는 총 발생액의 비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된다(Jones, 1991). 하지만 이 모형은 신용판매를 통해서 관리자가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Dechow et al.(1995)은 경영자가 신용제도를 이용해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변화에서 매출채권의 변화량까지 고려하는 수정 Jones모형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Kothari et al.(2005)은 과거와 현재의 기업성과가 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과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을 통제변수로 이 모형에 적용하였다. 다만, 이들 모형은 회귀식을 기반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므로 이에서 오는 측정오류를 발생시키며 대부분의 비경상적 항목들을 모두 재량적 항목으로 분류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수정Jones모형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이 모형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홍지윤, 2009; 박원, 2013; 신상훈, 나철호 외, 2015; 장지경, 2016 등).[5]

5) 수정 Jones모형은 Kothari et al.(2005)이 사용한 기업의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을 고려한 모형까지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이 제시한 성과반영 Jones 모형을 모두 반영한 모형을 이용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 = 총발생액(TAC)− 비재량적 발생액(NDAC)

총발생액 =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frac{TAC_{i,t}}{TA_{i,t-1}} = \beta_0 0 + \beta_1(\frac{1}{TA_{i,t-1}}) + \beta_2(\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TA_{i,t-1}}) + \beta_3(\frac{PPE_{i,t}}{TA_{i,t-1}}) + \beta_4 ROA_{i,t} + \epsilon_{i,t}$$

$TAC_{i,t}$: 기업 i의 t연도 총발생액

$TA_{i,t-1}$: 기업 i의 t−1연도 총자산

$\Delta REV_{i,t}$: 기업 i의 t연도 매출액 변화분

$\Delta REC_{i,t}$: 기업 i의 t연도 매출채권 변화분

$PPE_{i,t}$: 기업 i의 t연도 설비자산(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제외)

$ROA_{i,t}$: 기업 i의 t연도 총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재량적 발생액은 회계변경을 포함하는 이익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치이기 때문에 이익조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량적 발생액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특정 회계처리 방법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므로 특정한 회계변경 하나를 통해서 이익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검증력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회계선택의 순효과를 반영하는 재

량적 발생액의 크기로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김창범 외, 2007).

2)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의 측정

이익조정의 또 다른 개념으로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가 있다. 이익유연화란 경영자가 재무적 재량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성과인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기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말한다(Beidleman, 1973; 송인만, 1996) 이익유연화는 경영자가 미래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성과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회계이익의 일부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거나, 현재의 성과는 좋지만 미래의 성과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 회계이익 중 일부를 미래로 이연한다는 점에서 이익조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Beidleman, 1973; Defond and Park, 1997).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과도한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 저조한 실적을 내는 경우 방만한 경영이나 경영 무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대용치(Proxy)로 수정 Jones모형과 더불어 이익유연화 정도를 측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익유연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Zarowin(2002), Leuz et al.(2003) 등이 사용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익유연화는 순이익의 변동성(표준편차)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표준편차)비율로 측정할 수 있는데, 만약 현금의 유입과 유출로 측정되는 영업현금흐름은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 발생주의로 측정되는 회계상 순이익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이익유연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할 이익유연화를 위한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SM = \frac{VAR(N.I)}{VAR(CFO)} = \frac{\sigma(N.I)}{\sigma(CFO)}$$

SM = 이익 유연화 측정치, *N.I*=당기순이익, *CFO*=영업활동현금흐름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익유연화를 위해 이익의 변동성을 축소시킨다면 이익유연화의 측정치인 $\sigma(N.I)/\sigma(CFO)$의 값은 작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이익유연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을 적용하여 이익유연화를 측정할 때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해당 공기업의 측정대상연도를 포함한 과거 5개년 실적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로 한다. 이 모형의 경우 다양한 목적의 이익조정 행위 중 이익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이익조정 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Jones모형과는 달리 회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익조정의 측정오차

이익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발생액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관찰 가능한 변수로부터 측정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도출한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나 사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Healy & Palepu, 1993; Subramanyam, 1996; 문상혁・이효익, 2006).

또한 이익조정은 신호발생 효과를 지닐 수도 있는데 “경영자가 미래 경영성과의 개선척도를 제시하는 ‘기업의 사적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고, 경

영자와 이해관계자간에 존재하는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여 양자 간의 계약 비용을 낮추게 하는 등 기업 가치와 성과에 대한 정보전달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김창범 외, 2007).

또한 발생액 이익조정은 정상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난 활동을 이익조정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Jones 계열의 모형은 회귀식을 기반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므로 발생액의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측정오류를 발생시키며 대부분의 비경상적 항목들을 모두 재량적 항목으로 분류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순이익의 변동성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비율을 이용한 이익유연화 측정모형의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변동성 대비 순이익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익조정 중 이익의 평탄화를 위한 목적의 이익조정을 추정하는 것으로 측정치가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업이 시도할 수 있는 전체 이익조정 중 일부만을 나타내는 한계가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민간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상장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경우 주주, 채권자, 정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의사결정의 주요수단으로 회계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이익조정 등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익조정의 동

기를 다룬 이론을 기반으로 기업의 내적 혹은 외적 조건들이 이익조정을 실현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실제 이익조정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송인만・이용호(1997)는 경영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익유연화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유연화된 이익이 실제 이익보다 유연화 직후 연도에 근접하게 되어 이익유연화를 통해 투자자를 위한 이용자의 예측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유연화된 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Healy(1985)는 경영자 보너스제도에 명시된 상・하한선에 의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인 발생액(회계이익-영업현금흐름)이 영향을 받는 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이익이 상한선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익을 미래로 이연시켜 상한선 초과이익을 미래의 보너스로 받으려고 하고 이익이 하한선보다 많이 낮을 때는 이익을 늘리려 하는 대신 미래의 이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됨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자의 보너스계약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나종호・최종호(2000)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였으나, 최효순(2008)은 총부채 중 재무부채 구성비율과 매출액에 대한 이자비용부담율, 비기대순이연법인세대 증가를 매개 변수화하여 부채계약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부채계약가설이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대영・김문태(2007)는 시장감시와 정부통제가 큰 정유사가 정치적 비용 완화를 위해 이익을 조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정유사들은 원유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 재고자산을 감소시키고 상승한 분기에 재고자산을 증가시켜 매출원가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 감소를 위한 조정을 한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담합조사기간의 재량적 발생액은 비조사 기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담합조사 기간 유무를 나타낸 더미변수의 계수가 유의미한 음(-)의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나 부담금, 규제와 같은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이익을 미래로 이연시켜 정치적 비용을 회피한다는 이른바 정치적 비용가설을 실증하였다.

2.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장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이익조정 연구에 비해 공공부문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안일준(1990)은 공공기관의 이익평준화 현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공익성의 추구이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회계상 과도한 이익을 내게 되면 공익성이 퇴색되었다는 이유로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난과 반발에 직면하게 되며, 반대로 경영실적이나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방만한 경영 및 부실한 경영실패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장들이 회계이익의 변동성(분산)을 줄이고자 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영업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영업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중호・이호영(2006)은 공기업 감시 및 경영통제제도의 일환인 감사원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가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익조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이 될 경우 이익조정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와 이익조정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공기업의 경영진이 경영실적평가 중 주요사업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은호(2008)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특성으로 사외이사비율, 정부예산지원비율, 기관장 성과급 및 감사의 차이로 측정한 지배구조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외이사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은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또한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가적인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차진화・김완희(2010)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urgstahler & Dichev(1997)의 연구와 송인만(2004)의 연구에서 이용한 횡단면적 이익 분포도상의 증거부호 변화율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기관들의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적자보고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보고이

익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공공기관 자체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원인과 함께 공공재의 가격상승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과 정부의 가격상승 제한 등으로 인해 기관의 어려운 실정을 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윤성만・이강영(2012)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8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재무보고 이익을 흑자상태로 보이도록 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주희(2013) 등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이익 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실제 이익조정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성과평가 지표 중 이익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많이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박원・김태영(2013)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국고보조금 비율 등 재무적인 특성이 경영성과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부채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익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부채비율이 이익조정에 유의한 양(+)의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비율은 경영성과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익조정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공공기관들이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반감이나 정부의 규제 등을 고려하여 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 이

익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상훈・이세철(2015)은 공기업 청렴도 평가결과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조직의 청렴도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165개 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 결과 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 이후 이익조정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를 청렴도 평가 방식이 회계투명성을 측정, 평가하는데 미흡하며 회계적인 측면에서 공기업의 청렴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철호 등(2015)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11개(부채중점관리기업 134개, 기타공기업 7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국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증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이유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이 부채가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부채비율은 상승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임현(2015) 등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 268개와 유가증권상장기업 6,268개의 표본을 두고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가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가정 하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기간에 공기업과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유가증권 상장기업보다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이유를 해당 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임원의 연임을 보장받고 보다 높은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3. 내부감사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내부감사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 관련 제도나 지배구조의 특성 측면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철・이경태(2003)는 감사위원회의 도입 여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이익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이유를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보다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단순한 도입 여부만으로는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 연구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대주주 1인의 소유비율이 낮을수록 독립성이 높음)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손성규 등(2004)은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특성을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으로 구분하고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사용하여 감사위원회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다른 나라에서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 개최횟수가 높을수록 회계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성만이 이익조정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연구결과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등 감사기구와 관련된 제도나 형식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

홍지윤(2009)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과 김사위원회의 활동성이 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후 이익조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성 즉 감사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많을수록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측정지표)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위원회에 전문가가 있는 경우(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측정지표)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다.

공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감사위원회 제도나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신상훈・김선미(2015)는 내부감사 품질에 대한 상임감사 직무수행 평가제도 도입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제도의 도입은 공기업 이익조정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 결과를 통해 공기업 내부감사에 대한 직무성과평가의 도입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여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정현・김성환(2015)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성과급이 감사활동의 결과물인 회계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 성과급 금액, 총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익조정 여부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감사의 업무 충실도를 높여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승희(2016)는 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장・단기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사회 구성원 중 감사위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상임감사에 가중치를 둔 감사위원 점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감사위원회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위원 비율이 높거나 감사위원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인한 단기성과

증가 효과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이사회 구성원이자 내부 감시인인 감사위원이 기관장의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선행연구의 한계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감사위원회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역할로 감사위원회를 주목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감사기능을 강조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에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사위원회가 제도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하더라도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실제 감사활동이 미흡하거나 그 효과성이 약한 경우에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감사위원회의 지배구조 등 형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을 뿐 공기업 내부감사의 활동성이 이익조정을 억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민간 기업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감사위원회가 연간 개최된 횟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표는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에 미흡한 부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성이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자체 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이 구별된다. 이 중 공기업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세분화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85%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을 말한다.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되는데,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부유형이 구분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공공기관의 세부 유형 분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직원정원 50인 미만인 공공기관과 이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출처: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 (재구성)

이러한 공공기관 중 본 논문에서 분석할 연구대상은 공기업이다.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수현 외, 2009; 이중호・이호영, 2006; 윤성만, 2013; 정주희 외, 2013). 공기업은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일반기업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익조정 유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연구대상을 공기업으로 한정하여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은 총자산 규모 그리고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인 공기업을 말하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2018년 12월말 현재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0개인데 구체적인 공기업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 공기업의 종류

구분	소관 정부부처	해당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15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출처 : 2018년 공공기관 현황편람 (재구성), 기획재정부

** 밑줄친 공기업은 연구분석대상 공기업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35개 공기업 중 자료가 미비한 공기업 13개 공기업을 제외한 22개 공기업(시장형 13개, 준시장형 9개)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이다.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등 10개 기관은 종속변수인 5개년 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가 없으며[6],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는 해당산업에 속한 민간기업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금융산업에 속한 공기업으로 다른 공기업의 재무제표와의 이질성이 존재

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가 2017연도에만 실시되었음

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공기업에서 추출한 시계열과 횡단면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며 표본은 110개(22개 공기업 × 5개 연도)이다.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시스템(ALIO) 자료, NICE 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및 kisline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해당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공기업에 대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및 제5항에 따라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내부감사활동을 통해 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감사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성이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감사원은 매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기준은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이다. 심사등급은 심사군별로 자체감사기구를 점수순으로 상대평가한 심사점수 등을 감안하여 심사등급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데, 자체감사기구를 점수순으로 상대평가한 결과가 상위 25% 이내로 75점 이상이면 A등급(우수)을, 60% 이내로 70점 이상이면 B등급(양호)을, 60점 이상이면 C등급(보통)을, 하위 10% 이하이면 D등급(미흡)을 부여하게 된다.

<표 3>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기준

분 야	실지심사 주요 지표
감사조직·인력운영 (20%)	• 감사인의 경력,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 • 감사 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등
감사활동 (38%)	•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감사절차 준수 등 적정성 •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등
감사성과 (24%)	• 재무 조치 실적, 신분상 조치 실적 •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등
사후관리 (18%)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 유사·반복 지적사항 발생 여부 등

* 출처 :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고(재구성), 감사원

감사원이 발표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에는 내부감사기구의 제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조직구조의 적정성 역시 반영된다. 내부감사의 역할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 내부통제 조직을 조사 및 평가하고 조직 내부 각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편 회계기록과 기타 경영 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는 공공기관 내부감사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적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심사하는 평가지표로서 측정의 객관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기관일수록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우수하고 감사품질 역시 높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감사원이 발표하는 공기업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즉 특정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1)

<가설 1>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가설1-1)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가설1-2)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 수준은 감소한다.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임무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이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수치이다. 이 지표의 경우 감사기구의 조직특성이나, 내

부감사 활동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활동을 심사한 것으로 이익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 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여 이러한 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7]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8)'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위원회의 활동들을 참고하여, 회계 관련 주요 감사활동으로 두 가지 감사활동을 선정하고 이러한 회계 관련 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 관련 첫 번째 주요 감사활동은 내부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결산감사를 시행되는지의 여부이다.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는 사업과 회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부회계감사인(회계법인)이 내부감사기구보다 회계감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내부감사기구는 외부회계감사인에 비해 소속된 기관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계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제반 정보도 외부감사인에 비해 우위에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에

7)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최선관행(Best practices)을 담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하여 공표하는 규준으로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율적인 규범이다. 이 규준은 전문과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 여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해 결산감사가 수행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회계 관련 주요 내부감사활동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일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을 의미한다(강선아・전성빈, 2008).[8] 이처럼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을 막기 위해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통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준거 기준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9]에서는 적정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한 내부감사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관의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8)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엔론사태 이후 미국에서 발의된 Sarbanes-Oxley 법안에 따라 기업의 회계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로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9)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규준이다.

이와 같이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결산감사 실시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여부를 선정하고,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면 1점씩을 부여하여 해당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을 측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직접적인 감사활동이므로 이 지표 점수가 높을 경우 이익조정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2)

<가설2>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2-1)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2-2)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 수준은 감소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내부감사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와 관련된 기본개념 틀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된다.

<그림 2> 연구의 기본개념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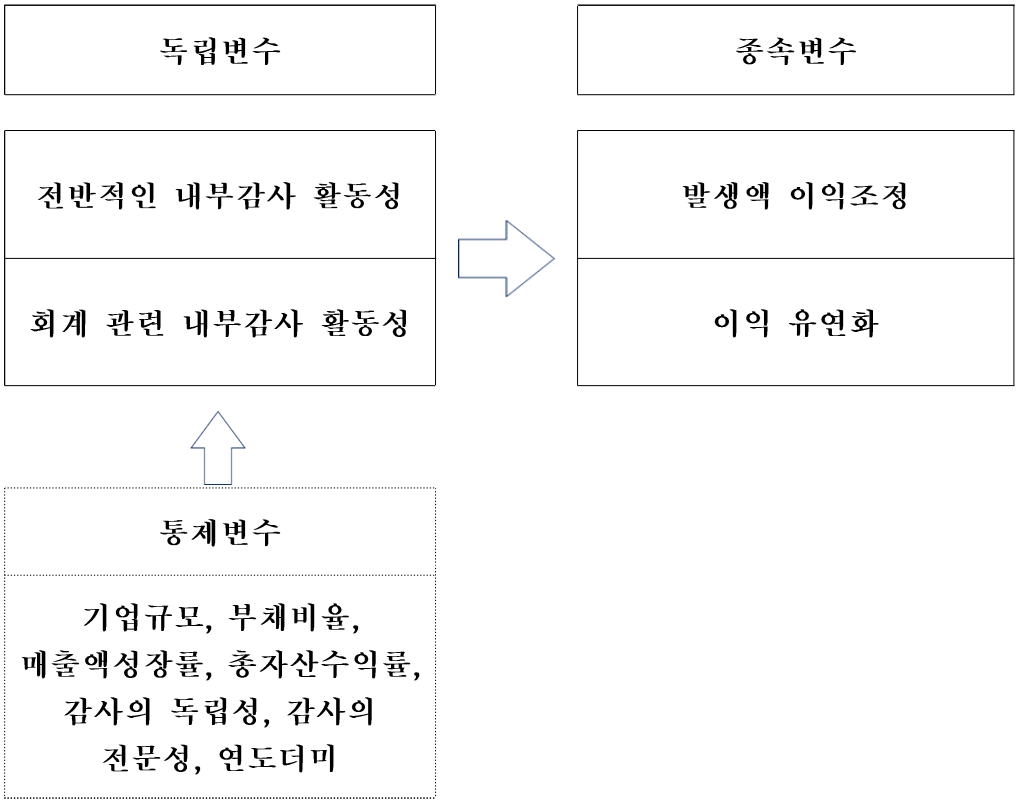

한편, 이 연구에 대한 가설 검증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1의 검증모형>

가설1-1의 검증모형 (연구모형 ①)

$$DA_{i,t} = \beta_0 + \beta_1 APP_{i,t} + \beta_2 SIZE_{i,t} + \beta_3 GRW_{i,t} + \beta_4 LEV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가설 1-2의 검증모형 (연구모형 ②)

$$SM_{i,t} = \beta_0 + \beta_1 APP_{i,t} + \beta_2 SIZE_{i,t} + \beta_3 GRW_{i,t} + \beta_4 LEV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가설2의 검증모형>

가설2-1의 검증모형 (연구모형 ③)

$$DA_{i,t} = \beta_0 + \beta_1 ACAU_{i,t} + \beta_2 SIZE_{i,t} + \beta_3 GRW_{i,t} + \beta_4 LEV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가설2-2의 검증모형 (연구모형 ④)

$$SM_{i,t} = \beta_0 + \beta_1 ACAU_{i,t} + \beta_2 SIZE_{i,t} + \beta_3 GRW_{i,t} + \beta_4 LEV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여기서 $DA_{i,t}$ = 발생액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치

$SM_{i,t}$ = 이익유연화의 추정치

$APP_{i,t}$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등급 측정치

$ACAU_{i,t}$ =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 측정치

$SIZE_{i,t}$ = 기업규모

$LEV_{i,t}$ = 부채비율

$GRW_{i,t}$ = 매출액 성장률

$ROA_{i,t}$ = 총자산수익률

$IDP_{i,t}$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측정치

$SPE_{i,t}$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측정치

2) 연구분석 방법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는 22개 공기업의 5년간 이익조정과 관련된 변수들이므로 시계열과 횡단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패널데이터(Panel Data)이다. 패널 회귀분석은 분석대상인 데이터가 시계열과 횡단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정효과(Fixed Effe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하게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특정한 모집단 그 자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정효과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연구대상인 공기업들은 소속된 산업이나 사업영역이 다르고 목적이나 기능 역시 상이하므로, 자료 표본에 대한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TATA 13.0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제3절 변수

1.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공기업 내부감사의 활동성이다. 공기업 내부감사의 활동성은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과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 번째 지표인 내부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성은 매년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등급을 활용한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거쳐 종합등급(4등급, 우수(A)-양호(B)-보통(C)-미흡(D))을 부여한다. 이처럼 부여된 등급을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의 측정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우수(A)는 4점, 양호(B)는 3점, 보통(C)은 2점, 미흡(D)은 1점을 부여하여 계량화한다.

두 번째 분석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는 회계 관련 내부감사의 활동성이다. 기관의 내부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성 지표가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부감사 전체 활동성과는 별개로 회계 관련 내부감사의 활동성을 측정하여 각각의 활동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회계 관련 내부감사의 활동성은 내부감사기구가 두 가지 회계 관련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로 측정하는데, 관련 지표는 내부감사기구가 결산감사를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내부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지의 여부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러한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을 계량화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가 매 회계연도에 각각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각각 1점씩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공기업은 이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0점에서 2점까지 지표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독립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독립변수

변수	지표	지표 점수
전반적인 내부감사 활동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등급	A=4점, B=3점, C=2점, D=1점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	①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결산감사 수행 여부 (수행=1점, 미수행=0점) ②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여부 (수행=1점, 미수행=0점)	①+② (0점~2점)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종속변수는 이익조정인데, 이익조정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이익유연화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익조정의 측정은 앞서 이익조정의 측정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이 제시한 성과반영 Jones 모형을 모두 반영한 모형을 이용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재량적발생액 = 총발생액(TAC)－비재량적 발생액(NDAC)

총발생액 =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frac{TAC_{i,t}}{TA_{i,t-1}} = \beta_0 0 + \beta_1(\frac{1}{TA_{i,t-1}}) + \beta_2(\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TA_{i,t-1}}) + \beta_3(\frac{PPE_{i,t}}{TA_{i,t-1}}) + \beta_4 ROA_{i,t} + \epsilon_{i,t}$$

$TAC_{i,t}$: 기업 i의 t연도 총발생액

$TA_{i,t-1}$: 기업 i의 t－1연도 총자산

$\Delta REV_{i,t}$: 기업 i의 t연도 매출액 변화분

$\Delta REC_{i,t}$: 기업 i의 t연도 매출채권 변화분

$PPE_{i,t}$: 기업 i의 t연도 설비자산(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제외)

$ROA_{i,t}$: 기업 i의 t연도 총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를 구하기 위해 해당 공기업이 속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다. 산업별로 자산대비 평균적인 영업현금흐름, 매출액, 순이익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잔차를 측정한 지표를 추정한다. 하지만 동일 산업 내에 속한 공공기관은 소수의 기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동일한 산업 내의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동일 산업 내의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측정한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 차이점은 있지만, 수정 Jones 모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출액, 영업현금흐름, 유형자산

의 비율은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한승희, 2016). 분석을 위해 공기업이 속한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KSIC)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적용 시에는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분류코드 내 샘플 대상이 적은 경우에는 차상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10)]

한편 공기업의 경우 과도한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 저조한 실적을 내는 경우 방만 경영이나 경영 무능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또 다른 대용치로 이익유연화 정도를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익유연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다.

$$SM = \frac{VAR(N.I)}{VAR(CFO)} = \frac{\sigma(N.I)}{\sigma(CFO)}$$

SM=이익유연화 측정치, N.I=당기순이익, CFO=영업활동현금흐름

위 모형에서 표준편차를 측정할 때 해당 공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해당 공기업의 측정대상 연도를 포함한 과거 5개년 실적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로 한다.

---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 분류이다. 이 분류는 생산단위(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분류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누어지는데 2018년말 현재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려되었던 기업규모, 부채비율, 매출액성장률, 총자산수익률, 내부감사의 전문성, 내부감사의 독립성, 연도더미 등을 통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규모(SIZE)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며, 기관의 사적정보도 반영할 수 있다. Watts & Zimmerman(1986)은 규모가설(size hypothesis)을 통해서 큰 기관이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의 집중을 받기 때문에 미래에 규제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현재의 이익을 줄이는 이익조정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기업 역시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일수록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익조정을 하려는 유인이 더욱 클 수 있다. Cheung & Warfield(2005)도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Fama & French, 1993).

부채비율(LEV)은 재무안정성에 대한 대리지표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Watts & Zimmerman(1986)이 제시한 부채약정가설에 따르면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에 보고하고자 하는 이익조정 유인을 크게 느낀다. 특히 기업이 회계에 근거한 약정이 있으며, 이익조정을 통해 적자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이익조정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DeAngelo et

al.(1994), Becker et al.(1998), 박종일(2003) 등은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은 과거에 이미 이익을 상향으로 조정하였거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인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정도가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uay et al.(1996), Burgstahler and Dichev(1997)는 기업의 성과와 이익조정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수익률(ROA)을 통제변수에 포함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시적인 이익조정을 하기보다는 실제 경영성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총자산수익률이 높은 기업일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성장률의 차이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매출액성장률(GRW)을 통제변수에 추가하기로 한다. 매출액성장률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의 매출액 증가율로 측정하는데, 매출액 성장률은 당기의 영업성과가 장기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활용한다(김지홍, 2009).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기업의 내부감사품질은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IND)과 전문성(EXP)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McMullen & Raghunandan(1996)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Xie et al.(2003)은 감사위원회에 회계와 재무적 지식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다만,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이익조정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손성규 등, 2004; 홍지윤, 2009). 본 연구에서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측정지표로 기획재정부

에서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상 해당 기업에 부여된 감사의 독립성 확보 평가등급과 전문성 확보 평가등급을 활용하였는데, 이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표의 평가등급이 B^0등급 이상이면 1, C등급 이하이면 0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11]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이므로 연도더미 변수($\Sigma Year_t$)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발생한 정치·경제적 사건들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11)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 독립성(윤리성과 통합하여 측정) 및 전문성 지표는 성과 및 노력의 정도에 따라 9등급(A+, Ao, B+, Bo, C, D+, Do, E+, Eo)으로 평가됨(2017년 평가 기준)

<표 5> 변수와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독립변수	전반적인 내부감사 활동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등급 (A:4점, B:3점, C:2점, D:1점)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	①+② ①내부감사기구의 결산감사 실시 여부 (실시: 1점, 미실시: 0점) ②내부감사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실시 여부 (실시 : 1점, 미실시 0점)
종속변수	발생액 이익조정	재량적 발생액 = 총발생액(TAC)- 비재량적 발생액(NDAC)
	이익유연화	$\frac{\sigma(N.I)}{\sigma(CFO)}$ $N.I$=당기순이익, CFO=영업활동현금흐름
통제변수	기업규모	log(총자산)
	재무안정성	부채비율(부채/자본)
	기업의 성장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
	경영성과	총자산수익률(ROA)
	연도더미	∑Year
	감사 독립성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 독립성 지표 등급 (B^0등급 이상이면 1, 미만은 0)
	감사 전문성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 전문성 지표 등급 (B^0등급 이상이면 1, 미만은 0)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분석 대상기관들의 주요 항목에 대한 기초통계량 값은 <표 6>과 같다.

<표 6>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DA	110	0.0015	0.0444	-0.1590	0.1586
	SM	110	1.3969	2.0977	0.0317	8.6922
독립변수	APP	110	2.7810	0.8574	1.0000	4.0000
	ACAU	110	1.1333	0.7875	0.0000	2.0000
통제변수	SIZE	110	22.9897	1.6134	19.2178	25.8805
	LEV	110	1.7420	6.6744	-6.1920	69.0501
	GRW	110	0.0116	0.1790	-0.5625	1.1873
	ROA	110	0.0128	0.0790	-0.3824	0.2776
	IDP	110	0.3238	0.4784	0.0000	1.0000
	SPE	110	0.3810	0.4917	0.0000	1.0000

종속변수는 발생액 이익조정(DA), 이익유연화(SM)이고 독립변수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APP),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ACAU)이며 통제변수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매출액성장률(GRW), 총자산수익률(ROA), 감사기구의 독립성(IDP) 및 전문성(SPE)이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의 대용치 중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DA)의 평균은 0.0015이고 표준편차는 0.0444인데, 이는 표본으로 선정된 공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평균적으로 총자산 대비 0.15%의 크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의 최대값은 0.1586이고 최소값은 -0.1590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이익유연화 측정치(SM)의 경우 평균은 1.3969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변동성 대비 순이익의 변동성이 약 140% 정도임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편차는 1.3969이고 최대값은 8.6922, 최소값은 0.0317로 이익유연화의 측정치가 넓은 분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내부감사의 활동성과 관련된 변수요인들이다. 먼저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APP는 평균이 2.7810이며 표준편차는 0.8574인데 이는 연구대상 공기업들의 자체감사활동 평가등급이 평균적으로 B등급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12] 회계 관련 내부감사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AAUD는 결산감사 시행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값은 2, 최소값은 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1333, 표준편차는 0.7875로 나타났다.

제2절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아래

12) 본 연구에서 B등급을 계량화한 점수는 3.0점임

<표 7>과 같다.[13)]

<표 7>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DA	SM	APP	ACAU	SIZE	LEV	GRW	ROA	IDP	SPE
DA	1									
SM	0.005 (0.954)	1								
APP	-0.248 (0.008)	0.141 (0.139)	1							
ACAU	-0.049 (0.604)	-0.060 (0.531)	0.209 (0.028)	1						
SIZE	-0.171 (0.073)	-0.008 (0.930)	0.351 (0.000)	0.472 (0.000)	1					
LEV	-0.045 (0.634)	0.161 (0.091)	-0.172 (0.072)	0.083 (0.387)	0.095 (0.320)	1				
GRW	0.030 (0.753)	0.213 (0.024)	-0.031 (0.744)	-0.122 (0.203)	-0.090 (0.345)	-0.048 (0.617)	1			
ROA	-0.152 (0.113)	-0.232 (0.014)	0.253 (0.007)	0.026 (0.781)	-0.084 (0.380)	-0.486 (0.000)	0.067 (0.484)	1		
IDP	-0.087 (0.364)	0.237 (0.012)	-0.045 (0.633)	0.049 (0.610)	-0.237 (0.012)	-0.058 (0.544)	0.012 (0.896)	0.184 (0.053)	1	
SPE	-0.086 (0.367)	0.173 (0.070)	0.031 (0.745)	0.053 (0.579)	-0.194 (0.041)	-0.058 (0.541)	0.056 (0.561)	0.239 (0.011)	0.813 (0.000)	1

* 괄호안은 유의수준

Pearson 상관계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양(+)과 음(-)의 부호는 두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뚜렷한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 이상인 경우 높은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13) DA(발생액 이익조정), SM(이익유연화), APP(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ACAU(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 GRW(매출액성장률), ROA(총자산수익률), IDP(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SPE(감사기구의 전문성)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발생액이익조정(DA)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등급(APP)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SM(이익유연화)의 경우 LEV(부채비율), GRW(매출액 성장률), IDP(감사기구의 독립성), SPE(감사기구의 전문성)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OA(총자산수익률)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APP(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결과)는 통제변수 중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 ROA(총자산수익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ACAU(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는 SIZE(기업규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독립변수인 APP(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결과)와 ACAU(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는 상관계수가 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제3절 실증분석결과

앞에서 기술한 다양한 변수들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과 횡단면적인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데이터가 시계열과 횡단면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오차항을 두 개로 나누어 추가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 이를 단순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t} = \alpha + \beta_{i,t} + u_i + e_{i,t}$$

(i=패널개체, i=관측연도)

위의 모형처럼 패널회귀모형에서는 오차항이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갖지만 패널개체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가지는 오차항(u_i)과 패널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 순수한 오차항($e_{i,t}$)이 존재하게 된다. 이 때 오차항 u_i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패널개체별로 고정된 상수값으로 보는지 혹은 확률변수로 보는지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패널회귀모형에서 오차항(u_i)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는 하우스만(hausman) 검정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검정결과 본 연구모형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의 검증은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대적 비교를 위해 합동 OLS(Pooled OLS) 회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각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하였다. VIF는 회귀식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로 인해서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민인식・최필선, 2012).

$$VIF = \frac{1}{1 - R_i^2}$$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1/VIF가 0.1보다 작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각 연구모형에서 변수들의 VIF는 3.4이하로 1/VIF가 0.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4) 민인식・최필선(2016),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p101-102

1. 분석 1: 전반적인 감사활동과 이익조정(가설 1)

가설 1은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성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측정치인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즉 특정 공기업의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좋을수록 해당 공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내부감사활동성의 측정치는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등급을 활용하며,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발생액 이익조정(가설1-1)과 이익유연화 측정치(가설1-2)를 활용한다. 가설 1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가설1-1)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가설1-2)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 수준은 감소한다.

연구가설 1-1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DA_{i,t} = \beta_0 + \beta_1 APP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 주) $DA_{i,t}$ = 발생액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치

$APP_{i,t}$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등급

$SIZE_{i,t}$ = 기업규모

$LEV_{i,t}$ = 부채비율

$GRW_{i,t}$ = 매출액 성장률

$ROA_{i,t}$ = 총자산수익률

$IDP_{i,t}$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SPE_{i,t}$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표 8> 가설 1-1(연구모형①)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DA(발생액 이익조정)	Panel (Fixed Effect)		Pooled OLS	
	β	t-Stat	β	t-Stat
APP	-0.003	-0.47	-0.009*	-1.82
SIZE	0.053*	1.91	-0.003	-1.33
LEV	0.002	0.34	-0.000	-1.1
GRW	-0.009	-0.41	-0.004	-0.17
ROA	0.175**	2.12	-0.106*	-1.69
IDP	-0.018	-1.14	-0.018	-1.22
SPE	0.008	0.63	0.009	0.66
Constant	-1.175*	-1.86	0.135**	2.16
R^2	within = 0.3025 between = 0.1024 overall = 0.0248		0.1710	

주1) **, *는 각각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연도더미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음

위의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외부평가 측정치인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APP)는 종속변수인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DA)에 대한 t값이 -0.47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외부평가가 좋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다만, 합동 OLS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의 t값이 2.16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인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전반적인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발생액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기업의 자체감사활동을 업무감사와 이행감사, 회계감사로 구분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서 업무감사나 이행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회계감사에 비해 훨씬 크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심사평가는 업무감사활동이나 이행감사활동 그리고 회계감사활동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한 결과이므로 이 지표의 경우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을 대표하는 측정치로서 한계가 있다.[15]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특정 공기업의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등급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즉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은 우수하더라도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은 우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모형에서 통제변수 중 기업규모(SIZE)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어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자산수익률(ROA)의 경우 5% 유의수준

15) 업무감사란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활동 및 업무절차에 대하여 그 능률과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이행감사란 어떤 조직이 상위기관 등에서 정한 절차, 의무규정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감사를 말함 (이효익, 2010)

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을 하려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에서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 1-2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SM_{i,t} = \beta_0 + \beta_1 APP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 주) $SM_{i,t}$ = 이익유연화의 추정치

$APP_{i,t}$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등급

$SIZE_{i,t}$ = 기업규모

$LEV_{i,t}$ = 부채비율

$GRW_{i,t}$ = 매출액 성장률

$ROA_{i,t}$ = 총자산수익률

$IDP_{i,t}$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SPE_{i,t}$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표 9> 가설 1-2(연구모형②)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SM(이익유연화)	Panel (Fixed Effect)		Pooled OLS	
	β	t-Stat	β	t-Stat
APP	-0.186	-0.75	0.660***	2.81
SIZE	-2.285**	-2.21	-0.058	-0.48
LEV	0.005	0.24	0.027	0.88
GRW	1.988	2.55	2.987***	2.93
ROA	-6.651**	-2.14	-8.364***	-3.08
IDP	0.251	0.44	1.731***	2.64
SPE	0.115	0.25	-0.494	-0.77
Constant	53.33**	2.25	-0.102	-0.04
R^2	within = 0.4210 between = 0.0005 overall = 0.0096		0.3069	

주1) ***, **, *는 각 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연도더미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음

위의 <표 9>에서와 같이 연구모형②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외부평가 측정치인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APP)는 종속변수인 이익유연화 측정치(SM)에 대한 t값이 -0.75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외부평가가 좋을수록 이익유연화를 통한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우수하다고 해

서 반드시 이익유연화를 통한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 1-1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이 업무감사나 이행감사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심사평가는 업무감사 또는 이행감사활동과 회계감사활동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전반적인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이므로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부감사활동성에 대한 측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등급이 우수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유연화 형태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연구모형 ①과 마찬가지로 합동OLS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의 t값이 2.81로 1%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이익유연화 측정치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 모형에서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는 이익유연화 측정치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조정 형태 중 이익유연화 동기에 대한 유인을 적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총자산수익률(ROA)역시 5% 유의수준에서 이익유연화 측정치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익률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적정한 성과가 확보되었으므로 이익을 평탄화 하려는 동기가 약화되어 이익유연화의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 2: 회계관련 감사활동과 이익조정(가설 2)

가설 2는 독립변수인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내부감사기구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이 우수할수록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독립변수인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은 내부감사기구의 결산감사 실시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여부를 바탕으로 측정되며,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발생액 이익조정(가설2-1)과 이익유연화 측정치(가설2-2)를 활용한다. 가설 2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가설2-1)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가설2-2)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 수준은 감소한다.

한편, 연구가설 2-1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DA_{i,t} = \beta_0 + \beta_1 ACAU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 주) $DA_{i,t}$ = 발생액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치
$ACAU_{i,t}$ =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
$SIZE_{i,t}$ = 기업규모, $LEV_{i,t}$ = 부채비율
$GRW_{i,t}$ = 매출액 성장률
$ROA_{i,t}$ = 총자산수익률

$IDP_{i,t}$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SPE_{i,t}$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표 10> 가설 2-1(연구모형③)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DA(발생액 이익조정)	Panel (Fixed Effect)		Pooled OLS	
	β	t-Stat	β	t-Stat
ACAU	-0.023*	-1.67	0.004	0.78
SIZE	0.065**	2.41	-0.006**	-2.27
LEV	0.000	0.33	-0.000	-0.99
GRW	-0.006	-0.32	-0.000	-0.02
ROA	0.163**	2.01	-0.135**	-2.18
IDP	-0.015	-1.03	-0.017	-1.15
SPE	0.008	0.67	0.007	0.5
Constant	-1.446**	-2.37	0.175**	2.57
R^2	within = 0.3250 between = 0.1064 overall = 0.0281		0.1485	

주1) **, *는 각각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연도더미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음

위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가설 2-1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ACAU)은 종속변수인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DA)에 대한 t값이 -1.67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값은 -0.023으로 측정되었다. 따라

서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결산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하게 발생액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우수할수록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연구모형①(가설 1-1)은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전반적인 감사활동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었는데, 감사원 심사평가의 경우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아닌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이므로 심사평가 결과 자체가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로 이 모형에서는 패널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 변수의 경우 t값이 2.41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어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자산수익률(ROA) 역시 t값이 2.01로 5% 유의수준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이익조정 수준 역시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에서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 2-2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SM_{i,t} = \beta_0 + \beta_1 ACAU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IDP_{i,t} + \beta_7 SPE_{i,t} + \Sigma Year_{i,t} + \epsilon_{i,t}$$

* 주) $SM_{i,t}$ = 이익유연화의 추정치

$ACAU_{i,t}$ =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

$SIZE_{i,t}$ = 기업규모

$LEV_{i,t}$ = 부채비율

$GRW_{i,t}$ = 매출액 성장률

$ROA_{i,t}$ = 총자산수익률

$IDP_{i,t}$ =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SPE_{i,t}$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표 11> 가설 2-2(연구모형④)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SM(이익유연화)	Panel (Fixed Effect)		Pooled OLS	
	β	t-Stat	β	t-Stat
ACAU	-0.369	-0.68	-0.292	-1.08
SIZE	-1.959*	-1.9	0.144	1.07
LEV	0.005	0.25	0.022	0.7
GRW	2.008**	2.57	2.750	2.6**
ROA	-6.933**	-2.23	-6.416	-2.34**
IDP	0.359	0.64	1.674	2.47**
SPE	0.113	0.24	-0.343	-0.52
Constant	45.78*	1.96	-2.740	-0.91
R^2	within = 0.4202 between = 0.0020 overall = 0.0156		0.2599	

주1) **, *는 각각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연도더미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음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가설 2-2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이익유연화 측정치(SM)에 대한 독립변수인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의 t값은 -0.68로 두 변수는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발생액 이익조정의 경우 회계처리 관련 경영자의 재량적 결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이익조정을 측정하는 지표이지만, 이익유연화는 회계상 이익을 연도별로 평탄화하는 이익조정의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적 결정뿐만 아니라 실물투자나 비용의 조정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분석 결과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과 이익유연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발생액 이익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익유연화 형태의 이익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품질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회계투명성 확보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더욱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계 감사활동의 품질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모형에서 합동OLS에 따른 분석 결과 역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의 t값은 -1.9로 10% 수준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에 있었고, 매출액성장률(GRW)은 t값이 2.57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총자산수익률(ROA) 역시 t값이 -2.23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부감사활동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분석결과 정리

연구가설		분석결과
가설1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유의미하지 않음
	(가설1-1)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유의미하지 않음
	(가설1-2) 공기업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유연화 수준은 감소한다.	유의미하지 않음
가설2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일부 유의미**
	(가설2-1)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수준은 감소한다.	**유의미함 (-)**
	(가설2-2)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 수준은 감소한다.	유의미하지 않음

위의 <표 12>와 같이 연구가설 중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이 우수할수록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2-1만 채택되었는데, 이는 내부감사활동 중 회계 관련 감사활동이 발생액 이익조정을 억제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감사기구의 특성과 관련하여 통제변수로 고려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발생액 이익조정과 이익유연화 측정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만으로는 소속 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내부감사기구의 실효적인 활동성이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논리와 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연구요약 및 함의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이 이익조정을 억제하여 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성이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익조정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이익유연화 추정치로 측정하였으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내부감사 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내부감사의 활동성 그 자체만으로는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2와 관련하여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결산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같은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이 발생액 이익조정을 억제하는데 효

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생액 이익조정은 주로 경영자가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재량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고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은 이러한 형태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성이 높으면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조정행위가 감소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감사활동이 적정한 수준의 감사품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익유연화 형태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모든 가설에서 기업의 자산규모와 ROA는 이익조정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이익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공기업은 주인-대리인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내·외부에는 다양한 감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심사, 공공기관 국정감사, 외부회계감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외부감사제도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기업의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감사기구는 소속 기관의 재

무보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처리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부정보를 외부감사인보다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회계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내부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공기업 내부감사기구가 실시하는 감사는 업무감사나 이행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과 이익조정은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성이 높은 경우 업무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회계투명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부감사활동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회계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투명하다 하더라도 기업 내 회계정보의 생성 및 전달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하는 결산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같은 회계 관련 내부감사 활동은 재량적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을 강화할 때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한다. 다만, 회계 관련 내부감사활동성도 이익유연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회계 관련 내

부감사활동이 이익유연화 형태의 이익조정 행위는 유의미하게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내부감사품질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더욱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계 감사활동의 품질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감사기구의 주요역할과 임무는 소속 기관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내부감사기구가 회계 관련 감사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회계감사를 외부감사인에게만 의존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의 회계투명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회계 관련 감사활동성이 높아질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점은 공기업 내부감사기구가 내부결산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와 같은 회계 관련 감사활동을 중요한 감사활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

본 연구는 공기업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성이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치로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발생액 이익조정을 활용하였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정 Jones모형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모형이지만 이 모형에서 도출한 수치는 발생액을 활용한 이익조정의 추정치일 뿐 실제 경영활동에서 어떠한 회계처리나 재량적 의사결정이 이익조정에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인 공기업의 발생액 이익조정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추정 시 연구대상 공기업이 속해 있는 동일 산업 내 민간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포함시켜 소속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나, 개별 공기업이 갖는 이질성과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종속변수인 이익유연화 측정치 역시 개별 기업의 현금흐름의 편차 대비 발생액 이익의 편차로 이익유연화 정도를 추정한 값으로 개별 공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한 해당 공기업의 데이터는 5년간의 시계열 데이터이나,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장기간에 걸친 표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에서 22개 공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현금흐름 등 재무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내부감사활동이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의미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부채비율, 매출액성장률, 자산수익률 등 공기업 성과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계량변수들을 통제하였으나 이익조정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성과평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를 변수로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투자나 비용 등 실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이익조정 대용치를 측정하여 내부감사활동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차진화・김완희(2010).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0권 제3호. 171-199.

박원・김태영(201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36호, 25-44.

금병욱・문두철(2016). “공공기관의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4권 제1호, 1-30.

나철호・김임현・고종권(2015).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4권 제4호, 163-198.

조정현・김성환(2015). “내부감사의 성과보상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20권 제5호, 237-257.

신상훈・김선미(2015). “내부감사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3호, 1-21.

한승희(2016). “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장·단기 재무/회계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중호・이호영(2006). “감사와 경영실적평가가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43(1), 81-105.

김창범・이창수・최현섭(2007).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향후 전망”. 국제회계연구 제18집, 279-299.

김유찬・강윤식(2011). “기업지배구조가 실물활동에 기반을 둔 이익조정에 미치는 효과”. 경영학연구, 40(1), 1-28.

홍지윤(2009). “감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제3호, 203-230.

손성규・최정호・이은철(2004). “감사위원회의 효과: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3호, 61-90.

송인만(2004).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9-51.

안치현 외(2016). “이익측정모형으로서 발생액모형과 수익모형의 적합성, 검정력 비교연구”. 회계저널 제25권 제1호, 423-454.

윤성만(2013).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2권 제4호, 51-79.

김산(2014). “공기업 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톱니현상과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준기(2014). “공기업정책론”. 법문사, 57-61.

Dechow, P. M., & Skinner, D. J. (2000). Earnings management: Reconciling the views of accounting academics,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Accounting Horizons, 14(2): 235-250.

Roychowdhury, S. (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 335-370.

Gunny, K. A. (2005).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Jones, J.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3-228.

Kothari, S. P., A. J. Leone, &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Cohen, D., & P. Zarowin. (2010).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round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50(1): 2-19.

Schipper, K. (1989).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3(4): 91-102.

Abstract

The effect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 on Earnings management

Lee My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which is introduced to solve the agency problem of the public enterprise, effectively secures transparency of accounting by restrain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audit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internal audit activity,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has no effect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income smoothing. However the effect of accounting related internal audit activity on accounting transparenc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ounting related internal audit activity, which is another independent variable, had a negative effect on discretionary accruals.

It implies that the more excellent the accounting related internal audit activity of the public enterprise is, the more effective it is to suppress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activity of the internal audit related to the overall work itself can not directly affect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When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ntensifies accounting related internal audit activities such as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or assessmen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ccounting transparency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keywords : Public enterprise, Internal audit activities,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transparency

Student number : 2018-28232